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79호
----------	-------

2017. 09. 11.(월)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08월 21일
- 회부일자 : 2017년 08월 24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08월 30일

-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7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 기존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각각 명시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기능)들을 안 제1호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 기존의 제2호는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 기존 제3호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포함되며, ‘성과평가’는 이미 같은 조례 제27조(성과평가)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 제29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바, 이를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로잡음.

나.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법 조항의 직접 인용을 통한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9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이양섭,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이광희,
황규철

1.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비함(안 제7조)
- 나.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라. 협의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과 협의함.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하여는**” 을 “**관하여**” 로, “**것을**” 을 “**경우를**” 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된다**” 를 “**아니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u>관하여는</u>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u>것을</u>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u>관하여</u> ----- ----- <u>경우를</u> -----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1. <u>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u> 2. <u>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 절차에 의해 교부하는 지방보조 금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 내 용과 사업자를 정하지 않은 지방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u> 3. <u>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u> 4. <u>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수 반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u>	제7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u>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u> 2. <u>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u> 〈삭 제〉 〈삭 제〉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과 기능) 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